

2026학년도 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모집 안내

1. 국내 현장실습수업 개요

국내 현장실습수업이란 학생들의 전공 실무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임

2. 운영 유형 및 기간

우리 대학의 현장실습은 '센터모집, 사업단연계, 교수추천'의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운영 형태에 따라 진행 방법, 기간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신청 학생의 상황에 맞게 현장실습을 신청하기 바람

구분	모집기간	비고
실습기간	2026. 9. 1.(화) ~ 12. 31.(목)	- 기간 내 15주(75일) 600시간 이상 - 기관별 실습기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
학생신청	<u>2026. 7. 16.(목) ~ 8. 6.(목)</u>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s://field.cu.ac.kr)
학생선발	2026. 8. 13.(목)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개별 문자 안내

※ 사업단 연계는 사업단별(RISE AI·DX혁신인재사업단) 별도 안내

- [대상] 사업단별 소속 학과 및 선발 학생

3.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통요건	- 본교에서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계절제	-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4. 학점인정

가. 학점인정학기: 현장실습 수행학과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을 인정함

나. 현장실습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인정(Pass), 그렇지 못한 경우 실격(Fail) 처리함

다.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계절제 2회, 학기제 1회까지만 이수 가능함

라.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제, 일경험점프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시 까지 최대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전공만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20학점 까지 인정, 복수전공 이수 시 주전공, 복수전공은 각 최소이수학점 기준의 1/3까지 인정함
마.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교과목명	실습기간(시간)	교과구분	학점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3 (전공선택)	15주(75일) 600시간 이상	전공선택 or 전공선택&교양선택	12학점
	국내현장실습 4 (교양선택)			

※ 전문자격 자격증 취득(영양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하지 않으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 없는 현장실습수업은 인정함(현장실습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함)

※ 사회봉사,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 단기 체험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음

5. 신청방법

가.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주소: <https://field.cu.ac.kr>

나. 신청방법: 학생 로그인(학생지원포털 아이디, 패스워드) → 신청관리 → 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 → 참여기업 조회 → 현장실습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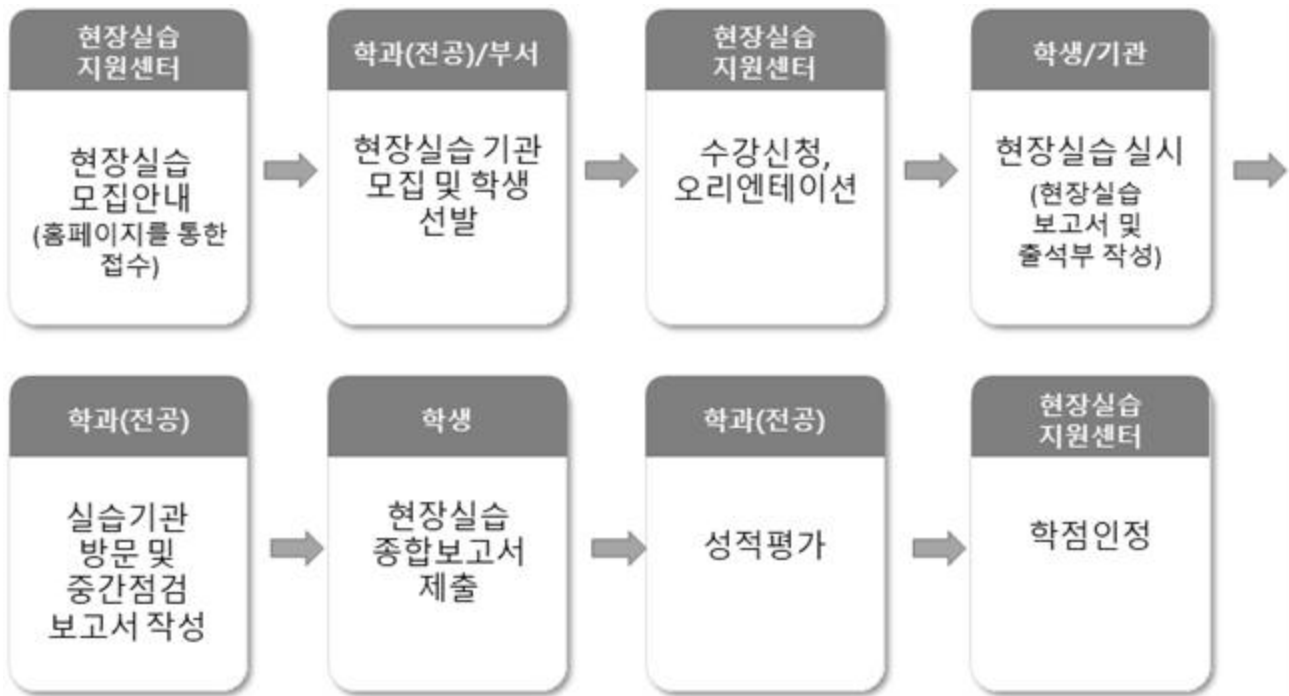
※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https://field.cu.ac.kr>) 운영 매뉴얼 참조(학생 로그인→커뮤니티→자료실→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매뉴얼(학생))

6. 학기제 현장실습 유의사항

가.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과장학금, 참인재스텔라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장학금 관련 문의는 장학지원팀(053-850-2953)으로 요망

나. 학기제 현장실습 중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현장실습을 포기할 경우 해당 학기 학점인정 및 기타 현장실습 이수에 따른 혜택을 취득할 수 없음

7. 현장실습 운영 절차



8. 유의사항

가.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법정공휴일, 기업 자체 휴무(단체 휴가, 창립기념일, 행사 일 등)는 현장실습 실적(인정 일수)에서 제외함

나.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다. 해당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 일반과목은 수강할 수 없음(사이버 강좌 제외)

라.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기 일주일 전에 실습기관, 학과 사무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포기절차에 따라 현장실습 포기를 신청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이수를 불인정함

사. 실습 시작일 전까지 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함

아. 현장실습 기간 중 참여 불가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현장실습을 불인정함

자.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9. 문의사항: 현장실습지원센터(053-850-3503)